

#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추경예산 개요

#### 1. 세 입

- 해당사항 없음.

#### 2. 세 출

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65,399천원으로 기정 예산(664,199천원) 대비 0.18% (120만원) 증액한 수준이며,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#### <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>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4년도					증감률		
	예산		추경예산	증감		증감률		
	당초	기정		당초	기정	당초	기정	
총 계	664,199	664,199	665,399	1,200	1,200	0.18	0.18	
행정관리	소 계	664,199	664,199	665,399	1,200	1,200	0.18	0.18
	사업비	544,152	544,152	544,152	-	-	-	-
	행정운영경비	120,047	120,047	121,247	1,200	1,200	1.0%	1.0%

〈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〉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별	2024 예산		2024예산 (추경예산안)	당초·기정예산 대비			
	당초	기정		증감		증감률	
				당초	기정	당초	기정
합 계	664,199	664,199	665,399	1,200	1,200	0.18%	0.18%
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	157,422	157,422	157,422	-	-	-	-
시민참여 활성화	244,300	244,300	244,300	-	-	-	-
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	142,430	142,430	142,430	-	-	-	-
기본경비	120,047	120,047	121,247	1,200	1,200	1.0%	1.0%

## II. 검토의견

### 1. 세출예산 검토

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이하 '위원회')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“기본경비” 중 ‘직책급업무수행경비’(4백 2십만원)를 5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.

#### 〈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〉

(단위: 천원)

구분	사업명 / 예산과목	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		증감액	증(감액) 사유
		기정	추경		
	총 계	664,199	665,399	1,200	
세출	기본경비	120,047	121,247	1,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초예산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4급 기관장(400천원)이 아닌 4급 보조기관(350천원)으로 편성한바, 50천원*6월('24. 1~6월) 과소편성분(300천원) 증액</li> <li>○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급 승격(4급 기관장→3·4급)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0천원*6월('24. 7~12월) 추가소요분(900천원) 증액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width: fit-content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책급업무수행경비(4.2백만원→5.4백만원)</li> </ul> </div>

#### 〈세부산출기초 조사서 증감내역〉

과목구분	산출 내역
204 - 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급 기관장 50천원*6월(1~6월) 과소편성분: 300천원</li> <li>○ 위원장(4급 기관장)→(3·4급) 150천원*6월(7~12월): 900천원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= 1,200,000원</p>
	증액(추가경정예산) 사유
	'24. 7. 1.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직책 승격(개방형 4급→복수직 3급)으로 직책급 증액 및 당초예산 직책급 과소편성분 추가편성

- 첫째, 위원회는 보조기관<sup>1)</sup>이 아닌 합의제행정기관<sup>2)</sup>임에도 불구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4급 기관장(월 40만원)이 아닌 4급 보조기관(월 35만원)으로 책정하여 상반기(1~6월)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과소 편성되었던바, 이를 소급하여 추가 편성[5만원\*6월(1~6월) 분(총 30만원)]하려는 것임.

**<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>**

직책급업무수행경비(204-01) - 주무과 기본경비에 편성

○ 경비성격 :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

○ 기준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월 액	연 액
▶ 4급		
-기 관 장	400	4,800
-보조기관	350	4,200

- 예산의 착오편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,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- 둘째, 서울시 조직개편(2024.7.1.)에 따른 위원회 확대·개편(감사위원회로부터 인권담당관 이관)으로 인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직책 승격(개방형 4급→복수직 3급)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증액 편성(90만원) 하려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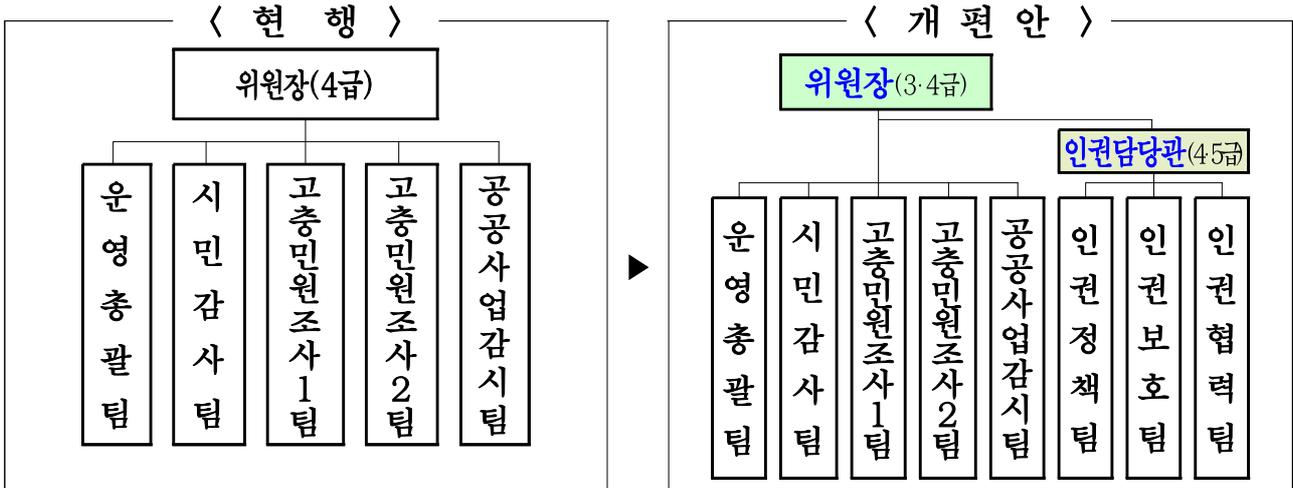
※ 하반기(7~12월) 과소편성분(보조기관→기관장) 5만원\*6월(30만원) + 위원장 직책 승격(개방형 4급 → 복수직 3급) 으로 직책급 증액 추가 편성(40만원 → 50만원) 10만원\*6월(60만원). 총 90만원.

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정의) 8. “보조기관”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정감시, 고충민원 조사,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\*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: 9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 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월 50만원 편성 가능

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직개편안 〉



- 조직개편에 따른 ‘직책급업무수행경비’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,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중단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, 인권담당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.
- 또한, 인권담당관의 직급(4급→4·5급 복수직급)이 하향되면서, 위원회 산하로 이관되는 만큼, 현 위원장(4급→3·4급 복수직급)의 임기(2022. 5. 26. ~ 2025. 5. 25.) 만료 시까지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결론적으로,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, 예산편성 오류 등에 따른 불필요한 추경은 지양하고,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전문위원 정 찬 일	입법조사관 손 정 욱
------------	-------------